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 1 민 사 부

판 결

사	건	2014가합200774	부당이득금
원	고	국민건강보험공단	
피	고	1. 김OO	
		2. 원OO	
		3. 이OO	
		4. 송OO	
		5. 김△△	
변	론	중	결
		2014. 5. 20.(피고 4.에 대하여)	
		2014. 6. 3.(피고 5.에 대하여)	
		2014. 6. 26.(피고 1., 2., 3.에 대하여)	
판	결	선	고
		2014. 7. 17.	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김OO, 피고 원OO, 피고 이OO은 각자(부진정연대하여) 902,245,130원 및
위 돈에 대하여 2009. 1. 7.부터 2014. 4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김OO, 피고 이OO, 피고 송OO은 각자(부진정연대하여) 1,350,677,39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0. 4. 28.부터 2014. 4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다. 피고 김OO, 피고 송OO은 각자(부진정연대하여) 1,586,154,55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. 4. 12.부터 2014. 4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라. 피고 김OO, 피고 김△△은 각자(부진정연대하여) 1,818,894,37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. 8. 25.부터 2014. 4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 중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44%는 피고 김OO, 5%는 피고 원OO, 13%는 피고 이OO, 22%는 피고 송OO, 16%는 피고 김△△이 부담하고, 피고들이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 지출자인 해당 피고가 스스로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관련법규정

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 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, 치과 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

1) 피고 김OO은 의료인이 아니고, 나머지 피고들은 의사로서 의료인이다.

2) 피고 김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670-5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에서 원무과 사무실, 물리치료실,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, 2007. 12. 13.부터 2012. 8. 14.까지 사이에 별지 1. 표 '개설일자' 및 '개설명의자'란 기재와 같이 의사인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'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670-5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'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.

다. 형사판결의 확정

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별지 2. 표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각 판결은 별지 2. 표 기재와 같이 모두 확정되었다(이하 피고들의 위 의료법위반행위를 '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'라 한다).

라.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

원고는 2012. 10. 9. 피고들에게, 2013. 1. 9. 피고 김OO, 피고 김△△에게 '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민법 제741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라'는 취지의 요양급

여비용 환수결정(이하 '이 사건 환수결정'이라 한다)을 통보하였다. 피고별로 최종결정된 환수대상 요양급여비용(이하 '이 사건 요양급여비용'이라 한다)은 별지 1. 표 '환수대상 요양급여비용'란 기재와 같고, 현재까지 미변제된 환수대상 요양급여비용은 별지 1. 표 '미변제금액'란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

○ 피고 김OO에 대하여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○ 피고 원OO, 피고 이OO, 피고 송OO, 피고 김△△: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 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

가. 구 국민건강보험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국민건강보험법'이라 한다)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. 의료법 제33조 제2항,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,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다.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나.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, 피고들은 별지 1. 표 기재 '개설일자'란에 따

른 기간별로 '환수대상자'란에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, 의료인이 아닌 피고 김OO 이 의사인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. 그리고 위와 같이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원OO, 피고 이OO, 피고 송OO, 피고 김△△이 각 진료행위를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별지 1. 표 기재 '환수대상 요양급여비용'란 기재와 같이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다.

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, 피고들은 별지 1. 표 '환수대상자'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자(부진정연대하여) 원고에게 별지 1. 표 '미변제금액'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

1) 피고 이OO, 피고 김△△ 주장의 요지

피고 이OO, 피고 김△△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.

가) 피고 이OO : 관련법규정의 취지 및 목적, 요양급여비용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, 피고 이규신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,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'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나) 피고 김△△: 피고 김△△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

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,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,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.

2) 판단
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'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'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,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처럼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. 따라서, 위 피고들의 위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'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'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, 위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 이OO, 피고 김△△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나.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병원운영비 등은 부당이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

1) 피고 이OO, 피고 송OO, 피고 김△△ 주장의 요지

피고 이OO, 피고 송OO, 피고 김△△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병원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은 부당이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가) 피고 이OO: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소모품 구입비, 병원 직원들에 대한

급여, 병원 운영비 등은 피고 이OO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.

나) 피고 송OO: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 경우 원고로서는 다른 요양기관에 같은 금액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, 피고 송OO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월급에 불과하다.

다) 피고 김△△: 피고 김△△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월급에 불과하다.

2) 판단

가)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은 원고의 손해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며,

나)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와는 서로 전제가 달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

다) 위 피고들로부터 진료 받은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인 결과로서 이러한 가정적 결과에 의한 이득은 손익상계 제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득이라 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 이OO, 피고 송OO, 피고 김△△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따라서, 원고에게, 피고들은 별지 1. 표 '환수대상자'란에 각 순번 기재된 바와 같이

각자(부진정연대하여), 부당이득으로 별지 1. 표 '미변제금액'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원고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. 4. 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숙

 판사 정승혜

 판사 오범석

별지1.

순 번	개설일자	개설명의자	환수대상자	환수대상 요양급여비용 (최종지급일)	변제금액	미변제금액
1	2007. 12. 13.~ 2008. 9. 30.	피고 원○○ 피고 이○○	피고 김○○ 피고 원○○ 피고 이○○	1,080,994,490원 (2009. 1. 7.)	178,749,360원	902,245,130원
2	2008.10. 1.~ 2009. 11. 30.	피고 이○○ 피고 송○○	피고 김○○ 피고 이○○ 피고 송○○	1,350,677,390원 (2010. 4. 28.)		1,350,677,390원
3	2009. 12. 1.~ 2011. 2. 28.	피고 송○○	피고 김○○ 피고 송○○	1,586,154,550원 (2011. 4. 12.)		1,586,154,550원
4	2011. 3. 1.~ 2012. 8. 14.	피고 김△△	피고 김○○ 피고 김△△	1,870,873,000원 (2012. 8. 25.)	51,978,630원	1,818,894,370원

별지 2.

순 번	피고	사건번호	선고형 (선고일자)	확정일자
1	김OO	대구지방법원 2012고단0000	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(2013. 7. 12.)	2013. 7. 20.
2	원OO	대구지방법원 2012고약00000	벌금 300만 원 (2013. 1. 10.)	2013. 1. 24.
3	이OO	대구지방법원2012고단0000	벌금 1,000만 원 (2013. 7. 12.)	2014. 7. 10.
		대구지방법원2013노0000	항소기각 (2014. 1. 9.)	
		대법원 2014도0000	상고기각 (2014. 7. 10.)	
4	송OO	대구지방법원 2012고약00000	벌금 300만 원 (2013. 1. 10.)	2013. 1. 24.
5	김△△	대구지방법원 2012고약00000	벌금 300만 원 (2013. 1. 10.)	2014. 3. 28.
		대구지방법원 2013고정000	벌금300만원 (2013. 7. 3.)	
		대구지방법원 2013노0000	항소기각 (2014. 1. 17.)	
		대법원 2014도0000	상고기각 (2014. 3. 21.)	